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전투표기간 변경, 사전투표 현황관리 규정 신설 등>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4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4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는 실무상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할구역 이외의 선거인이 하는 '관외사전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 않고 있고, 규정 방식도 관외사전투표 위주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하여 각종 부정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전투표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할 구역의 선거인과 관할 구역 외의 선거인으로 구분한 사전투표자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나.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고, 사전투표

함을 관내사전투표함과 관외사전투표함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정리함(안 제151조제3항, 제155조제4항, 제158조, 제176조).

다.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의 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17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인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를 관내·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사전투표기간 변경

개정안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인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3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48조제1항).[1)]

사전투표제도는 2012년 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부재자투표가 사전신고를 요구하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던 단점을 보완하여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음.[2)3)]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선거일에 근무 등 일정이 있거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는 유권자도 사전투표일에 투표가 가능해지는 등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율 또한 같은 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4)]

---

1) 격리자 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격리자 등 한정 투표소의 경우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궐선거 등의 경우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운영함(제155조제6항).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89호) 제안이유 중
"2013년 1월 1일부터 부재자투표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제도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3) 개정된 사전투표제는 2013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적용되었고, 이후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음(김도협, "주요 선거제도에 관한 일고찰 - 비례대표제와 사전투표제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37호, 2021, p.370.)

4) 송진미,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 편의성 증진과 투표율 제고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2242호, 2024.

《 사전투표제 도입 전후 전국단위 선거 투표율 현황 》

구분		전체투표율(%)	사전투표율(%)
대통령선거	제18대대선(2012)	75.8	-
	제19대대선(2017)	77.2	26.1
	제20대대선(2022)	77.1	36.9
	제21대대선(2025)	79.4	34.7
국회의원선거	제19대총선(2012)	54.2	-
	제20대총선(2016)	58.0	12.2
	제21대총선(2020)	66.2	26.7
	제22대총선(2024)	67.0	31.3
지방선거	제5회지선(2010)	54.5	-
	제6회지선(2014)	56.8	11.5
	제7회지선(2018)	60.2	20.1
	제8회지선(2022)	50.9	2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재가공

그런데, 4~5일의 시차가 있는 유권자의 의사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5] 사전투표기간 이후 단일화 등으로 인한 후보사퇴 시 사표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음.[6]

5)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인데, 이것이 4~5일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에는 논리적 오류가 있다는 시각이 있음(조원용, “대통령 법정선거일 이전의 ‘투표’에 대한 헌법학적 일고찰 - 사전투표 개선과 재외선거 공관개표 도입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28-1, 2022, pp.366~367.)

6) 조원용, 앞의 논문, pp.368~369.

이에 개정안은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된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여 사전투표와 선거일 간의 간극을 축소함으로써 유권자의 민의가 왜곡될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 개정안의 상세 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사전투표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
선거일과의 간극	3일	1일

다만, 사전투표일과 선거일과의 간극 축소로 인해 투표마감시각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는 관외사전투표지 등기배송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7)]

실제 최근 선거 일자별 회송용봉투 접수 현황을 보면, 선거일 3일 전까지 95% 이상의 관외사전투표지가 우편을 통해 접수되지만, 선거일 2일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회송된 투표용지도 존재하므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의 간극이 축소될 경우 이와 같은 투표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임.

7)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제한 없이 투표를 허용하고, 그 개표를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현 구조상 관외사전투표지를 관할 선거구로 이송하는 우편물 우송체계의 역량이 중요해지며, 전국적으로 관외지역의 투표를 해당 지역으로 우송하기 위해 최소 3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대년, “사전투표제도의 도입 경과와 그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6권제4호(통권88호), 2014. p.308.

《 최근 선거 일자별 회송용봉투 접수현황 》

선거명	계	D-4	D-3	D-2	D-1	선거일
제21대 대선	4,292,053	1,921,114 (44.7%)	2,201,258 (51.3%)	169,675 (4.0%)	5 (0%)	1 (0%)
제22대 국선	3,211,524	1,496,102 (46.6%)	1,601,746 (49.9%)	113,574 (3.5%)	102 (0%)	0 (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 국민 여론, 선거 업무 수행의 현실적 어려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상 관외사전투표지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도착해야 하므로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도달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선거일 전 3일부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투표 및 개표 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시점이므로 투표용지관리, 투표관리관 및 개표사무원 교육과 사전투표 관리·관외사전투표지 접수·우편투표함 투입 등의 관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관내·관외사전투표 구분 및 관련 규정 정비

개정안은 법상 사전투표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관내·관외사전투표 구분 관련 개정안의 내용 》

구분	현행	개정안
사전투표의 구분	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음(제158조제1항)	사전투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제158조제1항 후단 및 각호 신설) : - 관내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선거인이 하는 투표 - 관외사전투표: 관할구역 이외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투표
투표용지 및 봉투 교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고(제158조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58조제5항)	투표용지 및 봉투 교부 방식을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를 구분하여 명시(제158조제3항 및 제5항) - 관외사전투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함(제158조제3항 후단 신설) - 관내사전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58조제5항)
투표함 투입 방식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투입(제158조제4항)	투표함 투입 방식을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를 구분하여 명시(제158조제4항~제5항) - 관외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 - 관내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없이 관내사전투표함에 직접 투입
투표마감 후 이송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자 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제158조제6항제1호)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를 구분하여 명시(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 관외사전투표: 현행과 같이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우편 발송 - 관내사전투표: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계
사전투표 현황 관리	-	선거인별 사전투표 일시 및 사전투표소명이 포함된 사전투표자 현황을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매일 작성·관리해야 함(제171조의2 신설)

구체적으로 현행법에 사전투표로 함께 규정되어 있는 관내·관외사전투표를 구분하여 관내사전투표를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선거인이 하는 투표(안 제158조제1항제1호)”로, 관외사전투표를 “관할구역 이외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투표(안 제158조제1항제2호)”로 정의하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만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함을 명시하는(안 제158조제3항후단) 한편,

투표함 투입 및 이송 방식도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외사전투표함에 투입, 투표 마감 후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안 제158조제4항 및 158조제6항제1호), 관내사전투표는 회송용봉투 없이 관내사전투표함에 직접 투입하여 이를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인계하는 것으로(안 제158조제5항 및 158조제6항제2호) 양자를 구분하며,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자 현황을 관내·관외사전투표를 구분하여 매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구·시·군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관할 구역의 사전투표 선거인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제171조의2).

이를 통해 현재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내·관외사전투표의 투표 및 이송 방식을 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어 법과 현실을 일치시키고 구체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인한 논란이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이것이 선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사전투표기간 투표자 현황을 집계·관리할 의무를 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매일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작성·관리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경우, 현재도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8)]

한편, 현재도 사전투표관리관이 관내·관외선거인 투표용지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를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서식의 사전투표록에 기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는 통합선거인명부에도 투표 완료 선거인의 사전투표일 및 사전투표소명을 표시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구현 가능성, 예상되는 부작용, 국민여론, 대안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8)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 기피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 때마다 지방공무원을 동원하는 선거사무 제도의 개선과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퍼블릭타임즈, 공무원노조, “선거철 선관위 휴직 최고치… 선거사무는 지방공무원에 떠넘겨”, 2025.4.17.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규칙상 운영하고 있는 관내·관외사전투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나,

사전투표자 현황을 별도로 작성·집계·관리하는 것은 현재 열악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예산 상황과 사전투표기간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 및 인력·예산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참고1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가)

[별지 제50호서식의(가)] (표 지) (규칙 제86조제7항 관련) <개정 2021. 10. 22.>

년 월 일 실시 ○○선거

사 전 투 표 록

○○읍·면·동 사전투표소

(대 지)

1. 사전투표소 설비상황

가. 사전투표소설치 장소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장소 :)				
나. 사전투표소운영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다. 사전투표소설비에 관한 시정요구 및 조치상황	일 시	시 정 요 구 자		시정요구사항	조 치 사 항
		신 분	성 명		
라. 장비설치현황	명부단말기(노트북PC)			투표용지 발급기	
	대			대	

2.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가.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영	인 영	등 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나.사전투표관리관 유고 시 예비 도장의 인영	인 영	등 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다. 사전투표관리 상황	별지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과 같음	

이 사전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작성자 (직위) ○ ○ ○ ㊞

이 사전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또는 날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사전투표관리관 ○ ○ ○ ㊞

주: 1. 이 서식(별지 포함)에 기재된 사항 외에 투표상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 기재하는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 성명은 마지막 날에 근무한 사전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3. 사전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다만, 제책된 인쇄물의 형태로 된 때에는 대철을 생략한다.
4. 이 사전투표록은 1통을 작성한다.

<별지>

사전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1. 투표시간

투표시간	년 월 일	개 시 : 시 분 마 감 : 시 분

2. 사전투표관리관 등 근무상황 및 사전투표참관인 참관 상황

가. 사전투표관리관 · 사전투표사무원 근무상황

소 속	직 위	성 명	근무시간 (부터 까지)	비 고

주: "소속"칸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소속기관명을 적고 그 밖의 사람은 "일반인"으로 적으며, "직위"칸은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적는다.

나. 사전투표참관인 참관상황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참관인 성명	참관시간 (부터 까지)	참관인 교체상황	비고

주: 1. 참관도중에 교체된 참관인의 경우에는 참관인 교체상황에 "ㅇㅇㅇ과 교체(00:00)"로 기재한다.

2. "봉인지에 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지정된 참관인"은 "비고"칸에 "지정"이라고 적는다.

3. 사전투표관리상황

가. 투표용지 발급기와 투표함 및 기표소 검사상황

관내 사전투표함 수 (관내사전투표함 관리번호)	개 ( )

확인 ·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성명			확인 · 검사 · 참관을 거부한 참관인	
사전투표관리관	참관인	선거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성명	이유

나. 사전투표관리상황

구분	선거명	투표용지 발급기에 의한 발급수	투표용지 교부수
관내선거인			
관외선거인			

※ "관내선거인"은 선거별로 구분하여 적고, "관외선거인"은 선거별 구분 없이 적음.

다. 우체국에 인계한 회송용봉투수(관외선거인) : 등

라.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한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보조사유	보조자		비 고
				성 명	선거인과의 관계	

참고2 관내·관외투표 규정정비 관련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생 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 ~ ⑨ (생 략)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내사전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과----------. ④ ~ ⑨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③ (생 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內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제155조(투표시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내사전투표함·관외사전투표함----------.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	제158조(사전투표) ① ----------

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사전투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한다.
<신 설>	1. 관내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신 설>	2. 관외사전투표: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사전투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후단 신설>	③ ----------선거인에게----------. 이 경우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	④ 관외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와----------

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관내사전투표를 위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관내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⑥ ----------.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1. 관외사전투표함의 경우 관외사전투표함을----------. ----------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2. 관내사전투표함의 경우 관내사전투표함을----------. --------관내사전투표함----------.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1조의2(사전투표 현황 관리) ①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자 현황을 매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자 현황은 관내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과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선거일 전까지 관할 구역의 선거인 중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을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 현황에는 선거인별 사전투표 일시 및 사전투표소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

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 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의 參觀하에 選擧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⑤ (생 략)	투표의 접수·개표) ① ----------관외사전투표----------. ② ----------관내사전투표함----------. ③ ----------관내사전투표함----------. ④ ----------관내사전투표함----------. ⑤ (현행과 같음)